

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인가요?

공무원연금

사학연금

국민연금

군인연금

별정우체국직원연금



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soft-focus image of numerous white and yellow rose petals scattered across the surface. The petals are in various stages of bloom, creating a delicate and romantic aesthetic. The colors are bright and vibrant, contrasting gently with the white background.

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인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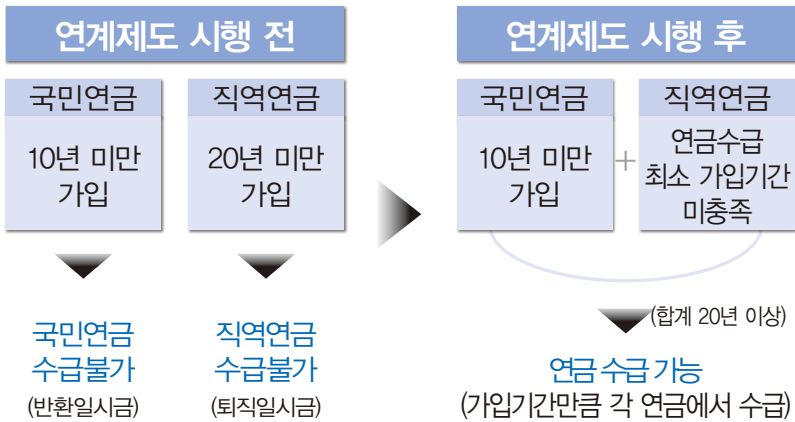
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주요내용

1 공적연금 연계제도란?	4
2 연계신청 대상	5
3 적용범위	6
4 연계신청 요건	7
5 연계반납금 납부	8
6 연계급여의 종류	9
7 연계급여 수급요건	10
8 중복급여의 조정	11
9 연계신청 및 급여청구 방법 ..	12



01 · 공적연금 연계제도란?

-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¹⁾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 기간²⁾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


- 연계의 기본원칙은 각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가입 기간만 연계하며,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
1)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함

2)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: 국민연금 10년, 직역연금 20년(2016. 1. 1.부터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10년으로 완화. 다만, 군인연금은 군인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20년을 유지)

02 · 연계신청 대상

-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, 연계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– 따라서,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

-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(2009.8.7.)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자부터 연계제도가 적용됩니다.

–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연계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

① 2007. 7. 23.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

② 2009. 2. 6.(이 법 공포일)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·복무 중인 자(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)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



03 · 적용 범위

- 연계를 신청한 자. 단, 연계를 신청한 자가 각 연금법상 수급요건을 모두 취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.
 -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·퇴역연금 수급권자이고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면 각 연금법을 적용하고, 연금연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수급권자 여부		연계기간	연금연계법에 의한 급여지급대상
노령연금 수급권자	퇴직·퇴역연금 수급권자		
해당	해당	-	×
해당	미해당	20년 이상	○
미해당	해당	20년 이상	○
미해당	미해당	20년 이상	○

※ 2016. 1. 1.부터 연금 수급요건을 완화(20년 이상 재직 → 10년 이상 재직)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 등이 개정됨

04 · 연계신청 요건

- 연계는 둘 이상의 연금에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.
-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※ 수급권 소멸 시기 : ① (국민연금) 수급연령 도달 후 5년, 임의계속 가입 탈퇴 후 5년

② (지역연금) 퇴직일시금 수급권자는 퇴직 후 5년, 연금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

① 지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: 지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부터 연계신청 가능

→ 연계를 희망하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하고,

→ 만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퇴직일시금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퇴직·퇴역연금, 퇴직·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·퇴역연금공제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할 수 없음

② 국민연금에서 지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: 지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부터 연계신청 가능(2016. 1. 1.부터 시행)

05 · 연계반납금 납부

-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일시금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 반납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.
 - 반납금 납부 신청은 연계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, 반납금 납부 고지 등 관련 업무는 직역연금 관리기관이 담당합니다.
-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.
 - 분할납부 시 납부 횟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, 연계급여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.

[분할납부 횟수]

재직기간	5년 미만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년 이상
분할납부 횟수	24회 이내	48회 이내	60회 이내

-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06 · 연계급여의 종류

- 연계에 따른 급여에는 연계노령연금, 연계퇴직연금, 연계노령유족연금, 연계퇴직유족연금의 4종류가 있습니다.

종 류	내 용	지급 기관
연계노령연금	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금	국민연금공단
연계퇴직연금	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금	직역연금공단
연계노령유족연금	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	국민연금공단
연계퇴직유족연금	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	직역연금공단

-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을, 직역재직·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각 직역연금 관리기관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 합니다.

–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만큼(기본연금액×가입기간/20)의 연금액을 지급받으며,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가입기간만큼(평균기준소득월액×재직·복무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×직역재직기간×재직·복무기간별 비율)의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.

-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을,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.

–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 10년 미만 유족연금액(기본연금액의 40%)에 해당 가입기간을 1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.

–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액의 60%를 지급합니다.

07 · 연계급여 수급요건

- 연계급여는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'20년 이상'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전체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더라도 한 쪽 연금 가입(재직)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서는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연금에서는 연계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.

※ 사례 : 국민연금 19년 6개월 가입 + 공무원 6개월 재직

→ 국민연금 19년 6개월에 대한 연계노령연금 + 공무원연금 6개월에 대한 퇴직일시금

-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,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[출생년도별 수급연령]

출생연도	~52년 까지	'53년~'56년	'57년~'60년	'61년~'64년	'65년~'68년	'69년 이후
수급연령	60세	61세	62세	63세	64세	65세

- 다만,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(65세) 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.

08 · 중복급여의 조정

-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.

☞ 이 경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유족 연금으로 보고,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으로 봅니다.

- 국민연금법에서는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,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정지하거나 20%를 지급합니다.

※ 사례 : 연계노령연금과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

- ① 연계노령연금 선택 : 연계노령연금 전액, 연계노령유족연금 20% 지급
- ② 연계노령유족연금 선택 :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지급

- 직역연금법에서는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유족연금액의 1/2을 감액 하여 지급합니다.



09 · 연계신청 및 급여청구 방법

- 연계신청 및 급여청구는 가입 이력, 연계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이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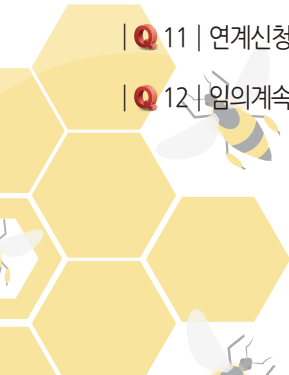
● 청구방법

신청방법	방 법
방문신청	- 연계신청서 또는 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
우편신청	- 연계신청서 또는 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
대리신청	- 해외체류, 수감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연계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- 교도소 또는 보호 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
인터넷신청	- 연계제도 홈페이지(www.ppsl.or.kr)에서 연계신청만 가능

- 급여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,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일까지 연계신청 또는 급여지급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.



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Q&A

- | Q 1 | 공무원 장애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가능 여부
 - | Q 2 | 직역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신청 후 직역에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합산 가능 여부
 - | Q 3 | 납부예외 기간도 연금 간 이동으로 인정하여 연계신청 대상으로 적용 여부
 - | Q 4 |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직역연금가입자가 되는 경우 연계신청 방법
 - | Q 5 |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립학교 재직 중인 교수의 연계신청 시기
 - | Q 6 |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닌 경우 합산 가능 여부
 - | Q 7 | 60세 이후 직역연금 근무 중인 경우 각 연금별 지급사유 발생일
 - | Q 8 | 연계신청한 후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연계급여 지급 가능 여부
 - | Q 9 | 연계신청자의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
 - | Q 10 |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연계신청하는 경우 반납금 산정 기준
 - | Q 11 | 연계신청 후 직역연금 퇴직시 지급시기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여부
 - | Q 12 | 임의계속가입 기간에 대한 연계노령연금액 산정 방법
- 

Q 1. 공무원 장해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가능 여부

▶ 사례

기관명	가입(재직)기간	기타사항
공무원연금	'96. 11. 23~'10. 7. 16 (165개월)	공무원연금 장해연금수급권 발생 (*10. 7. 16)
국민연금	'10. 9. 2	임의가입 후에 연계 신청하여 동일 일자로 당연가입 자격취득

- 공무원연금 장해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연계신청 가능 여부

A 직역연금 장해연금 수급자는 연계신청 가능

▶ 사유

- 장해연금과 퇴직급여는 별개의 급여이며, 장해연금을 받더라도 퇴직급여(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)가 지급됨
-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이나,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됨

Q 2. 직역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신청 후 직역에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합산가능 여부

-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신청 후, 다시 직역연금으로 이동했을 때 이동한 직역연금에서 기존 직역연금 재직기간(국민연금 가입전 이력)에 대해 합산 신청 가능 여부

A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 신청 후, 직역연금을 재임용 되었을 때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다시 연계신청을 할 수 있음

- 종전규정 : 재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
개정규정('10. 1. 1. 이후) : 재직 중인 경우 합산 신청 인정

합산이란?

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군인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(복무)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 받고자 할 경우, 퇴직 당시 수령하였던 퇴직급여액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토록(합산 반납금 납부)하고 종전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 기간에 합산하여 주는 제도

Q 3. 납부예외 기간도 연금 간 이동으로 인정하여 연계신청 대상으로 적용 여부

▶ 사례

기관명	가입(재직)기간	기타사항
국민연금	'01. 1. 2~'06. 3. 1 (2개월 납부, 나머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)	일시금 수령
사학연금	'06. 3. 1~'09. 2. 28	일시금 수령, 신청서상 분할납부 36개월 표기
국민연금	'09. 2. 28~'10. 3. 2(지역납부 예외) '10. 3. 2~현재(사업장, 1개월 납부)	

Q 법 공포('09. 2. 6) 이후 사학연금가입자격 상실 후 국민연금 자격 취득으로 이동일 적용 여부

A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에도 가입자 자격은 인정되므로, 연금 간 이동일이 적정함. 따라서, 연계신청 대상으로 적용됨
(다만,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있어야 연계신청 가능)

Q '06. 3. 1 이전 가입이력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을 원하거나 추납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연계기간 포함 여부

A 연금연계법 제10조제2항에 의해 반납금, 추납보험료 납부로 복원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

Q 4.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되는 경우 연계신청 방법

▶ 사례

기관명	가입(재직)기간	기타사항
사학연금	'09. 10. 12	퇴직일시금 수령
국민연금	'09. 10. 12~'09. 11. 30	지역취득(납부예외)
	'09. 12. 1~'14. 12. 31	사업장 가입자
공무원연금	'15. 1. 1 ~ 현재	

- 직역기관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다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될 경우 연계신청 방법

A 직역연금에 재가입 되었다면 직역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며,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부터 연계신청이 가능(2016. 1. 1일부터 시행)



Q 5.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립학교 재직 중인 교수의 연계신청 시기

▶ 사례

기관명	가입(재직)기간	기타사항
국민연금	'88. 5. 2~'08. 2. 29(16년 8월)	일시금 미수령
사학연금	'08. 3. 1~현재	사립학교 교수재직 중

● 연계신청 시기

A 사립학교에서 퇴직 전이라도 재직중에 연계신청이 가능함.

다만, 사립학교에서 만 60세 전에 연계신청을 하지않고 퇴직시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하여야 함

기본 조건

- 연계는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며,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연계 신청 가능

Q 6.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닌 경우 합산 가능 여부

▶ 사례

기관명	가입(재직)기간	기타사항
① 공무원연금	'96. 5. 30~'03. 11. 13	퇴직일시금 수령
② 국민연금	'03. 12. 8~'08. 5. 16	
③ 공무원연금	'08. 8. 20~'10. 3. 5	퇴직일시금 수령
④ 국민연금	'10. 9. 1~현재	

Q '07. 7. 23 이후 국민연금→공무원→국민연금으로 이동하였으므로
②, ③, ④ 기간 모두 연계 가능 여부

A 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연계신청 가능

- 국민연금 가입자이었던 자가 '07. 7. 23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

Q ① 기간을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,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닌데
합산 가능 여부

A 합산 불가능(재직 중인 경우에 합산신청 가능 : 2010. 1. 1 법 개정)

Q 7. 60세 이후 직역연금 근무 중인 경우 각 연금별 지급사유 발생일

▶ 사례

기관명	가입(재직)기간	기타사항
국민연금	'88. 1. 1~'08. 3. 25(가입기간 216개월)	
사립학교	'08. 3. 25~현재(가입기간 37개월)	

- 연계신청을 하고 사립학교에서 계속 근무시 각각의 지급사유 발생일

A 51년생의 연계급여 수급연령은 60세이므로 연계노령연금(국민연금)은 60세가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, 연계퇴직연금(사학연금)은 60세 이후에도 재직 시 직역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함

- 다만, 출생연도별로 지급연령이 달라짐을 유의(10쪽 참조)



Q 8. 연계신청한 후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연계급여 지급 가능 여부

▶ 사례

기관명	가입(재직)기간	기타사항
국민연금	'02. 3. 5~'09. 3. 4(7년)	
공무원연금	'09. 3. 5~'22. 3. 4(13년)	퇴직 시 연계 신청

'23. 5월 사망(61세)

-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(63세) 도달 전 사망한다면 연계급여 지급 가능 여부

A 연계급여 지급개시 연령(63세) 도달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연계기간 20년을 충족하였다더라도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

- 사망 시점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 지급('16. 1. 1부터 퇴직연금 수급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퇴직연금 지급)
 - ※ 연계급여 수급요건(법 제10조제1항)
 - ① 연계신청 + ② 연계기간 20년 이상 + ③ 65세 이상
 - ※ 연계노령(퇴직)유족연금 수급권은 연계노령(퇴직)연금 수급권자 사망한 경우에만 발생

Q 9. 연계신청자의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

- 연계신청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사유 발생시 해당 급여 지급 여부
- ▲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은 국민연금법을 적용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당급여를 지급함

Q 10.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연계신청하는 경우 반납금 산정 기준

- 직역연금 가입 중 형벌의 사유로 감액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자가 국민연금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계신청하는 경우 반납금의 산정 기준
- ▲ 연금연계법 제8조제3항에 의거 퇴직일시금 수령시 형벌 등으로 급여를 제한 받은 자는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그대로 반납하면 됨

Q 11. 연계신청 후 직역연금 퇴직시 연계급여 지급 시기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여부

▶ 사례

기관명	가입(재직)기간	기타사항
국민연금	'88. 1. 1~'08. 3. 1(총 242개월 가입)	
사학연금	'08 3. 1~ 현재(가입기간 8년 미만)	65세 정년 예정

Q 각각의 연계(노령, 퇴직)연금 지급시기

A 연계노령연금(국민연금)은 58년생이므로 62세 때부터, 연계퇴직연금(사학연금)은 60세 이후에도 재직 시 퇴직 후부터 지급 가능

Q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65세까지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여부

A 퇴직시까지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

Q 12. 임의계속가입 기간에 대한 연계노령연금액 산정 방법

▶ 사례

기관명	가입(재직)기간	기타사항
사학연금	'89. 5. 1 ~ '00. 2. 28 (10년 10월 가입)	1949년생, 일시금 수령
국민연금	'00. 3. 1 ~ '09. 2. 28 (9년 가입) '09. 3. 1 ~ '12. 2. 28 (3년 가입)	사업장 가입자, 임의계속 가입
사학연금	'12. 3. 1 ~ '12. 4. 30	합산 및 연계신청, 퇴직(사립학교 교수)

Q 연계노령연금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연계퇴직연금 청구시 함께 청구할 경우에 연계노령연금 소급지급 가능 여부

A 1949년생은 60세에 급여지급사유가 발생되므로 연계노령연금은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, 연계퇴직연금과 함께 청구시 급여지급사유 발생일까지 소급하여 지급

Q 가능한 급여지급사유 발생일

A 수급연령이 이미 도달하였으므로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때('12. 4. 30)

Q 임의계속가입기간에 대한 연계노령연금액 산정 방법

A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는 제외되지만, 연계노령연금액 산정시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

연계신청대상 확인 흐름도





연금연계법 개정사항 주요 내용(2015년)

항 목	현 행	개 정
① 퇴직일시금 수령자의 연계신청 기간 제한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신청 가능
② 퇴직급여 제한자의 연계 신청시 반납금 제한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급여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 반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한받은 급여액 그대로 반납 * 연계퇴직급여는 해당 직역법에서 산정한 제한된 금액으로 수급
③ 연계신청 취소 간주 규정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역기관 재임용되어 합산 인정 시 종전의 연계는 취소 간주
④ 연계노령연금액 등 산정 시 임의계속가입기간 포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의계속 가입 기간 제외, 일시금으로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연계노령(유족) 연금액 산정 * 연계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행 유지
⑤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계급여 산정기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균보수월액(퇴직 전 3년 보수평균) × 2% × 직역재직기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균기준소득월액(재직기간 전체 소득평균) ×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× 직역재직기간 × 재직기간별 비율
⑥ 군인연금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지급시점으로 현재가치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퇴역 당시의 가치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계급여 지급시점 가치로 현재가치화, 재평가된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연계퇴직연금액 산정

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인가요?

문의처

- ◇ 보건복지부 (www.mw.go.kr)
 - 보건복지콜센터 ☎(국번없이) 129

- ◇ 각 연금관리기관
 - 국민연금공단(www.nps.or.kr) ☎(국번없이) 1355
 - 공무원연금공단(www.geps.or.kr) ☎1588-4321
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(www.tp.or.kr) ☎1588-4110
 - 국방부(www.mnd.go.kr) ☎(02) 3146-6471
 -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(www.popa.or.kr) ☎(02) 3278-7731~34



보건복지부
MINISTRY OF HEALTH & WELFARE